

## 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지침 】

본 창원지방검찰청진주시청(이하 “본 기관”이라 함)은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·관리 지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 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·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
### 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
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 합니다.

- 청사 방호 및 화재 예방
- 민원인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
-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

### 2.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

설치 대수	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
102대	청사건물 내·외부 및 주차장, 구치감 내·외부

### 3.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
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.

구 분	직 책	연 락 처
관리책임자	사 무 과 장	055-760-4540
접근권한자	보 안 담 당	055-760-4543
	시 설 담 당	
	통 신 담 당	
	청 원 경 찰	

#### 4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
촬영시간	보관기간	보관장소
24시간	촬영일로부터 30일	상황실, 구치감

- 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 합니다.

#### 5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
- 확인 방법 :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
- 확인 장소 : 사무과 총무계(보안담당)

## 6.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
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 기관은 귀하의 열람 등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이때 거부사유는 10일내 서면으로 통지하겠습니다.

※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

- 가.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나.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- 다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 될 우려가 큰 경우
- 라.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## 7.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
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, 개인영상정보의 위·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시 열람 목적·열람자·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

## 8. 개인영상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은 2012년 3월 26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·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·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
- 제정일자 : 2012년 3월 26일
- 개정일자 : 2017년 5월 10일
- 개정일자 : 2018년 11월 13일
- 시행일자 : 2018년 11월 13일
- 개정일자 : 2021년 5월 6일(2021. 5. 14. 시행)
- 개정일자 : 2023년 5월 30일(2023. 6. 7. 시행)

개인영상정보(□ 존재확인 □ 열람) 청구서			처리기한
※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			10일 이내
청 구 인	성 명		전 화 번 호
	생년월일		정보주체와의 관계
	주 소		
정보주체의 인적사항	성 명		전 화 번 호
	생년월일		
	주 소		
청구내용 (구 체 적 으 로 요청하지 않 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 음)	영상정보 기록기간	(예 : 2011.01.01 18:30 ~ 2011.01.01 19:00)	
	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	(예 :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)	
	청구 목적 및 사유		
<p>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 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 확인, 열람을 청구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span style="font-size: 1.2em;">년</span>            <span style="font-size: 1.2em;">월</span>            <span style="font-size: 1.2em;">일</span> 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 <span style="font-size: 1.2em;">청구인</span>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<span style="font-size: 1.2em;">(서명 또는 인)</span> 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○○○ 귀하</p>			
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			

